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 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 조 영업부서장

제 목 의료기관 발생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유권해석 결과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0.29, 환경부에서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공포·시행하였으며,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재활용을 금지하고 소각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부 재활용 업체에서 계약 체결을 통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적정 처리를 제고하고자 처리 방법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재활용 관련 조항은 미비한 상황이며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토록 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업체와 관할 지자체에 적정 처분 및 현장계도 요청 문서를 배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처분 지침 및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를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재활용 배출 및 처리 발견 시 조합(대외협력팀 : 02-718-7900)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지침 1부.  
2.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1부.  
3.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기사 1부. 끝.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담당 박성진 대외협력팀장 오은석 전무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 이민석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23 - 22호 (2023. 1. 12) 접수  
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지침

## 가.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9.11월, 환경부)

<p><b>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b></p> <p>2019. 11. 22.</p> <p> <b>환경부</b> 폐자원관리과</p>	<p>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방법 (위수탁 계약)</p> <p>□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운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중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 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li> <li>-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 불가</li> <li>○ (소각처분)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 받은 중간처분(소각) 업체에 위탁</li> </ul>
--	---

## 나. 2019년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19.12월, 환경부)

<p><b>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b></p> <p>2019. 12</p> <p> <b>환경부</b></p>	<p>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소각시설에서 처분(재활용 금지)</li> </ul>
---	---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

## 1 배 경

-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사태를 우려,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동 폐기물의 처리 관련 지침에서는 재활용을 금지하고 소각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재활용업체에서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을 통해 일회용기저귀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확인
- 이에 조합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방법에 대해 환경부 유권해석 의뢰('22.12.22)

## 2 질의내용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적정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 3 유권해석 결과

-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토록 하고 있음

###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방법 관련 유권해석 中 >

- 또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수집·운반,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상의 문제(악취, 세균증식 등)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개별 밀폐 포장, 전용봉투 분리배출, 보관기준 준수, 냉동차량 운반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처분도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고품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별칙조항은 현재 미비한 상황이며, 재활용, 벌칙 등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기사

### 파이낸셜뉴스

####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감염 예방대책 있나"

입력 2019.09.19 오후 2:25 수정 2019.09.19 오후 2:27

"보건복지부 재조사 나서 국민 건강 지켜야" 우려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세균 덩어리'로 밝혀진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우려 목소리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환경부가 아닌 질병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부가 나서 재조사에 나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넘쳐나는 의료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최근 감염 우려가 낮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렴구균과 폐렴균 녹농균이 검출되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 이재영 교수, 위탁연구책임자 단국대 김성환 교수)는 한국의료폐기물협회의 의뢰를 받아 최근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를 무작위로 채취해 감염성균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97곳(92%)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대장균'과 '부생성 포도상구균'은 80개소, 18개소, 19개소의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발견됐다.

여기에도 각종 화농성 염증과 식중독부터 패혈증까지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항색 포도상구균'이 74개소에서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지금의 대부분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나 요양 보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감염관리에

허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취합해 지난 2017년 사망자 18만명 중 감염병 사망자가 2만800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에 달했다"면서 "이는 뇌혈관 질환 사망자 2만2700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 요양병원 혹은 일반 병원에서도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따라 폐렴 또는 요로감염 등에 노출돼 있는데다 실제로 감염병 사망자 중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9378명으로 68%를 차지하고 패혈증이 4000여명 정도 된다"면서 "패혈증 중에서도 폐렴에 의한 패혈증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어 전반적인 사망률이 폐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특성상 대학병원 등에서 중증 질환을 앓고 난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므로 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다제내성균을 보균하고 입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아직까지 요양병원에는 감염관리 전담자를 두게 하는 규정이 없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 병원 내에서 환자들이 중증 감염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100곳의 전국 요양병원에서 500명의 환자 기저귀에서 감염균 검출률이 6% 수준이므로 위해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와 한국의료폐기물협회의 주장이 서로 상반돼 논란이 빚어지자 지금이라도 질병에 관한 문제는 전문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나서 이를 재조사해 병원 내 감염 우려성과 처리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법률 개정에도 동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의료폐기물협회에서는 전국 13곳의 처리시설 가운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과 처리량 문제는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1개 업체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